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46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임오경 · 김 윤 · 김 현
윤준병 · 황명선 · 조계원
박홍배 · 김재원 · 이수진
전용기 · 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수립을 통해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의5)

- 1) 현행법은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등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되므로 선수 폭행을 엄벌하는 수단의 하나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 2) 이에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고,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스포츠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나.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을 모든 체육지도자로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2조)

- 1)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그런데 지도업무 종사여부 파악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며 재교육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 3) 반복되는 스포츠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를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전체로 확대하고,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자격이 회복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 재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교육

관리의 실효성도 높히려는 것임.

다. (성)폭력 등 관련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 강화(안 제14조의4)

1)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전문체육선수등(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법적 제약 없이 체육 현장에서 활동함에 따라 체육인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이를 위해 기존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금지 등 조치 조항(제47조 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게 될 경우(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와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의 대회 출전 제한 등을 추가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체육계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 강화(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55조)

1) 스포츠윤리센터의 접수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 관계자 등에 요구된 자료의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조사의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2)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체육단체의 별도조사 등을 통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이중 절차 진행 및 결론 상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스포츠윤리

센터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시작을 통지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을 조사 종료 시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복제재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제도 개선(안 제18조의14 신설)

1)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국가대표·전문체육팀·학교운동부 선발·배치, 경기인 등록 및 체육대회 출전 등에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징계 이력 등 결격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결격자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의 징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5호 중 “아니한 사람”을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을 “체육지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4 중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조의5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의5제1항제2호 중 “요구”를 “요구.”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11까지를 각각 제18조의7부터 제18조의12까지로 하고,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조사개시 통지에 따른 징계 등 절차의 정지)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5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단체는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은 관련 징계 시효에서 제외한다.

제18조의9(중전의 제18조의8)제1호 중 “제18조의6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1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를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등에”로 한다.

제18조의14부터 제18조의17까지를 각각 제18조의15부터 제18조의18까지로 하고, 제1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4(징계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①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체육대회 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제2호 중 “제18조의10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제18조의10제3항”을 “제18조의11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6제2항”을 “제18조의7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6제3항”을 “제18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1조의6제2항”을 “제11조의6제3항”으로 한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p> <p>1. ~ 4. (생략)</p> <p>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u>안</u> <u>니한 사람</u></p> <p>6. (생략)</p> <p>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p> <p>① <u>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는</u>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 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p>	<p>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 ----- <u>안</u> <u>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u> <u>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u> <u>람</u></p> <p>6.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p> <p>① <u>체육지도자는</u> ----- ----- ----- ----- -----</p>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 · 기간 · 내용 · 방법 ·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

1. ~ 6. (생략)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생략)

② ~ ⑤ (생략)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조의5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생략)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후단 신설>

3.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요구.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조사개시 통지에 따른

징계 등 절차의 정지)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5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단체는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은 관련 징계 시효에서 제외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생략)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략)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

제18조의7(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현행 제18조의6과 같음)

제18조의8(신고자등의 보호) (현행 제18조의7과 같음)

제18조의9(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같음)

<삭 제>

⑤ -----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등에-----
-----.

제18조의14(징계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①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체육대회 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생략)

제18조의15(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현행 제18조의14와 같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관리) (생략)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생략)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 (생략)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
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1. (생략)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
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생략)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음)

제18조의16(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관리) (현행 제18
조의15와 같음)

제18조의17(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현행 제
18조의16과 같음)

제18조의18(통합신고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 (현행 제18
조의17과 같음)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11제1항-----

3.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
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
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

2. 제18조의11제3항-----

제55조(과태료) ① -----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제18조의7제2항-----

4. 제18조의7제3항-----

<p>거나 은폐한 자</p> <p>5.·6. (생략)</p> <p>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11조의6제2항</u>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p> <p>2. ~ 4. (생략)</p> <p>⑤ (생략)</p>	<p>-----</p> <p>5.·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1. <u>제11조의6제3항</u>-----</p> <p>-----</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	--